

FIP-2014-0005 (통권 제204호, 2014.10)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법제화와
국제규범 간 상충 여부 검토**

ISSUE
PAPER

Contents

I . 검토배경	1
II . 국제규범 상충 여부 전제 검토	2
1. 적합업종제도의 조치 해당성 여부	2
2. 적합업종제도의 외국기업 적용 여부	3
III . 업종별 국제규범 상충 여부	4
1. 제조업 분야	4
2. 서비스업 분야	8
IV . 결론 및 시사점	14
〈참고문헌〉	15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산업정책팀 강호성 선임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497 FAX : 02-6234-5301 E-mail : hosu@fki.or.kr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요

- [정의]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2조 11호) → 적합업종 지정 시 3년간 대기업의 사업활동 제한 → 3년 후 추가 1회(최대 3년간)에 한하여 재지정 가능
- [운영]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합의도출 및 공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상생법 20조의2 2항 2호)하고, 대기업이 적합업종 권고사항 미이행 시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제도로 이양
*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 자율 합의기구, 중소기업청은 정부 행정기관(정부부처)
- [지정현황] 2011년 제도시행 이후 2014년 9월 현재 제조업 86개, 서비스업 15개 적합업종 지정 완료, 2011년 지정된 82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올해 결정
- [적용대상]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사업 활동 중인 대기업이 적용대상
- [대상업종확대] 2011년 제조업 → 2013년 음식점업 등 생계형·생활밀착형 서비스업 → 2014년 도매업 등 사업지원형·지식기반형 서비스업으로 지정 대상 확대

◆ 중소기업적합업종 대기업 미이행 시 벌칙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권고내용을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청(2회)·미이행 사실의 언론공표 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
→ 중소기업청장은 미이행 대기업에 대해 이행권고 및 명령
→ 대기업 계속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소기업적합업종 주요 권고 유형

- [진입자제] 당해 업종·품목으로 새로운 대기업의 진입을 자제하는 것
- [확장자제] 당해 업종·품목을 이미 생산(또는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이 증설 등을 통해 생산량(또는 판매량) 확대를 자제하거나, 프랜차이즈 확장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자제하는 것 등
- [사업축소] 당해 업종·품목에서 이미 생산(또는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이 당해 업종·품목 전체시장 또는 세부시장에서 점유율을 축소하거나 생산량(또는 판매량)을 축소하는 것
- [사업이양] 당해 업종·품목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이 당해 업종·품목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생산설비 등을 위한 일반 중소기업에 이양하거나, 직접 또는 자회사 OEM을 통해 생산하던 것을 전량 일반 중소기업을 통해 OEM 생산하는 것

I. 검토배경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의거, 동반성장 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 합의 도출 등을 수행
 - 동반위는 적합업종 합의 미도출·불이행 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이에 따른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음
 - * 중기청장은 사업조정 신청 시 사업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시설 축소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 * 다만, 대기업의 사업이양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닌, ‘권고’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상기 이행명령에 대해 해당 대기업이 불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 최근 국회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이하 ‘적합업종제도’)의 규제 강화 법률안이 계류 중
 - 적합업종 선정주체를 동반위에서 정부(중기청)로 변경하여, 보호업종 및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함
 - 대기업의 적합업종 사업인수, 개시, 확장 금지를 법에 명문화
 - 현재 권고사항인 대기업의 적합업종 사업이양의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신설
- 적합업종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향후 규제 수준이 더욱 강화될 경우 WTO, FTA 등 국제규범과 상충 우려
 - 한국은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고, 2013년 4월 현재 4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되어 협정에 따른 의무가 수반됨
 - 現 상생법 및 향후 규제 강화조치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포함될 경우 국제규범과의 상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상생법 개정을 통한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등의 제도 강화 조치와 국제규범 간 상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사점 도출
 -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적합업종제도 법제화와 WTO, 한-미 FTA, 한-EU FTA 규정 간 상충 여부를 분석
 -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

Ⅱ. 국제규범 상충 여부 전제 검토

- 국제규범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제도의 국제법적 성격과 적용대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적합업종제도가 국제법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협약 당사국에 의한 조치(measure)’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차별적용 가능 여부 등 적합업종제도의 적용대상과 관련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1 적합업종제도의 조치 해당성 여부

-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고, 향후 규제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통상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치’에 해당

◆ GATS 제1조 1항, 한-미 FTA 제1.4조¹⁾

- 적합업종제도가 통상문제를 발생시키려면, 본 제도가 국제법상 당사국의 법률, 명령, 절차, 요구 등과 같은 ‘조치(measure)’에 해당하여야 함
-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적합업종 선정주체를 동반위에서 정부(중기청)로 변경하여, 보호업종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이 통과된다면, 적합업종제도는 명백한 당사국의 법률에 의한 조치에 해당
- 현 상생법 규정에 의한 동반위의 법적근거로도 적합업종 지정은 당사국의 조치로 판단될 수 있는 소지 존재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상생법 제20조1항에 의거 정부가 설립, 재단 내에 법률상 기능과 정부위탁 기능을 수행하는 동반위를 두고 적합업종을 결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기업이 규제를 받아 행정규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²⁾

1) 정누리(2013.9), p. 224에서 GATS와 한-미 FTA의 조치에 관한 정의규정들이 TRIMs협정이나 한-EU FTA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상관관계를 고려해볼 때 이들에 역시 준용한다 하여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설명

2) 김태윤(2014.4), pp. 1~9.

- * 상생법 제20조의 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둔다.
- * 행정규제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1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위임위탁자), 객체(내부규제 제외), 내용(행정목적 실현, 권리제한 의무부과), 형식(법령 등에 규정)의 요건이 필요

2 적합업종제도의 외국기업 적용 여부

- 국내기업 역차별 등으로 외국기업을 적합업종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상생법은 적용대상 대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 대기업을 요건을 갖추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라는 본질적인 면이 동일함에도, 외국기업만 적합업종제도 적용대상 제외는 국내기업 역차별
 - 2014년 6월 11일 동반위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안)’에서 “외국기업 역시 국내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

Ⅲ. 업종별 국제규범 상충 여부

- WTO 협정상 상품은 GATT·TRIMs 규정을, 서비스는 GATS 규정이 있으며, FTA(Free Trade Agreement)도 상품과 서비스를 별도 항목으로 구별
 - WTO 협정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이하 ‘TRIMs’), 서비스무역에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하 ‘GATS’)으로 구성
-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국제규범 간 상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1 제조업 분야

1) WTO규범 상충 여부

- [GATT] 일반적 의무사항으로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수량 제한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충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
 - 적합업종제도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지 않고, 모든 나라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원칙(GATT 제1조) 위반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적합업종제도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 내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 내국민 대우 원칙(GATT 제3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적합업종제도가 수출입수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량제한 금지 원칙(GATT 제11조 제1항)의 위반 소지 또한 낮은 상황
- [TRIMs] TRIMs도 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등의 위반 시 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충 가능성은 높지 않음

2) 한-미 FTA 상충 여부

- 한-미 FTA의 경우 내국민대우 등의 규정들 대부분은 적합업종제도와 상충 가능성은 높지 않아 국제분쟁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제도가 이와 충돌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시장개방을 전제로 한 ‘시장접근 보장 의무’도 부과되어 있지 않음
- 동반위의 사업축소, 확장자제 등의 권고로 인한 해당업종의 사업활동 제약과 관련하여 ‘간접수용’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간접수용이란 정부 규제로 자산가치 하락 등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
- 미국기업이 투자한 특정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을 경우 ‘간접수용’ 규정 위반 가능성 존재

◆ 한-미 FTA 제11.6조 수용 및 보상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수용)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 라. 적법절차와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따를 것

- 한-미 FTA는 해당국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적합업종제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가 공공질서 유지, 취약계층 우대 조치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일부 제한하는 것을 허용³⁾
 - 공공질서 유지는 국가안전, 사회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소기업이 상이군경, 소수민족 등과 동일한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⁴⁾
 - 적합업종제도 적용으로 간접수용 규정 위반이 문제될 경우, 공공질서 유지나 취약계층 우대 등의 사유로 적법성을 주장⁵⁾하기는 어려움

3) 한-미 FTA 부속서 11-나, para 3. 나

4) 정누리(2013.9), p. 239.

5)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본부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유보조향으로 우리나라가 공공질서 유지, 취약계층 우대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2013.6, 동반성장위원회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결론적으로, 미국투자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이하 ‘ISD’)를 통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직접 제소 가능

* 한-미 FTA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를 규정

□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사업이양 강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간접수용 규정 위반에 해당할 우려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사업이양 강제에 관한 상생법 개정안(조정태, 오영식) : 적합업종 권고 사항 위반으로 동반위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은 사업이양의 경우에도 이행 명령권 부여

* 현재는 사업이양은 이행 권고만 가능, 나머지 확장 및 진입자제, 사업축소는 명령 가능

3) 한-EU FTA 상충 여부

□ 한-EU FTA는 한-미 FTA와 달리 간접수용이나 ISD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합업종제도의 한-EU FTA에서는 간접수용 관련보다는 ‘시장접근 보장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서비스업종에만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부과한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부과

○ 한-EU FTA 협정문에서는 시장개방 분야 및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규정

○ 즉, 투자 개방을 전제로 한 분야는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당사국은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없음

◆ 한-EU FTA 제7.11조 시장접근

1. 설립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해,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속서 7-가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현재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은 한-EU FTA상 시장개방 의무가 전제된 품목과 상당수 중첩되어 시장접근 보장의무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 한-EU FTA 협정에서는 농업·수렵업·임업, 광업·채석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등 크게 네 부문에 대한 개방품목이 명시

○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의 대부분이 한-EU FTA에서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는 품목에 해당되는 상황

< 한-EU FTA 개방전제 품목⁶⁾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비교 >

한-EU FTA 양허표상 개방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a)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 활동	
(b) 임업 및 벌목업	
B. 광업 및 채석업	
(a) 석탄, 갈탄의 채광; 토탄의 채광	
(b)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탐사를 제외한 원유 및 가스 채취에 수반된 서비스 활동	
(d) 금속 광업	
(e) 기타 광업 및 채석업	
C. 제조업	
(a) 음식료품 제조업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막걸리, 떡, 김치, 어묵, 식빵, 김, 두부, 원두커피, 단무지, 옥수수유(2개 품목), 앙금류, 면류(3개 품목), 다류(5개 품목), 도시락
(b) 담배제품 제조업	
(c) 직물류 제조업	기타가공사
(d) 의복 제조업; 모피의 가공 및 염색	남자 및 소년용 정장
(e) 가죽의 무두질 및 가공; 가방, 핸드백, 안장, 마구류 및 신발류 제조업	
(f)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목제품, 코르크제품 제조업; 고공품 및 조물 제조업	
(g)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기타인쇄물, 골판지상자, 판지상자 및 용기
(h)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사업	
(i) 코크스 제조로 제품의 제조업	
(j) 석유 정제품 제조업	
(l)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업	아연분말, 유기계면활성제, 세탁비누, 부식억제제, 부동액
(m)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재생타이어,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 플라스틱병
(n)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의 제조업	기타판유리가공품, 기타안전유리, 생석회, 아스콘
(o) 제1차 금속의 제조업	주조(6개 품목), 단조(7개 품목),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p) 기계류 및 장비를 제외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q)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r) 사무, 회계 및 계산용 기계 제조업	
(s)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류 및 장치 제조업	절연전선, 송배전변압기, 기타 개폐 및 보호 관련 기기, 휴대용저장장치, 배전반(2개 품목), 공기조화장치(3개 품목), 아크용 접기, 냉각탑, 냉동 냉장 쇼케이스, 주차기
(t)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 기기 제조업	

6) 구체적인 개방 범위는 업종별로 상이하게 규정됨

한-EU FTA 양허표상 개방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u)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LED등, DVR, 비디오도어폰
(v)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재제조부품, 레미콘
(w) 기타 (비군사용) 운송장비 제조업	
(x) 가구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y) 재활용	
D.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온수 공급	
a) 에너지 산업-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전력의 운송, 유통 및 판매	
b) 가스 제조; 가스배관을 통한 가스연료 공급	가스충전업(6개 품목)
(c) 증기 및 온수 공급	

- 또한, 적합업종제도는 한-EU FTA 협정 위반의 예외사유⁷⁾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중재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
 - 협정 위반의 예외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조치는 할 수 있으나,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상이군인, 소수민족 등과 동일한 취약계층에 반드시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 한-EU FTA 자체에는 ISD 규정이 없으나, 20개 EU 회원국과의 개별 투자 협정에서 ISD를 규정하고 있어 협정 위반 시 제소 가능성 존재

2 서비스업 분야

1) WTO규범 상충 여부

- 서비스업과 관련된 WTO 규범으로는 서비스무역 협정(GATS)이 있으며, 본 협정상 개방전제 업종에 대해 일정 수준의 시장접근 보장 의무 존재
 - GATS 규약상 우리나라는 총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등 8개 부문 총 78개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함

< GATS 우리나라 개방전제 분야 목록 >

양허 분야	
1. 사업서비스	3. 건설
A. 전문직업서비스	일반건설 (건물)
b. 회계서비스	일반건설 (토목)
c. 세무서비스	설치 및 조립
d. 건축설계서비스	완공
e. 엔지니어링서비스	기타

7) 한-EU FTA 제8.3조 가

양허 분야	
f.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4. 유통서비스
g.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	A. 중개서비스
B.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B. 도매서비스
a. 컴퓨터설비자문서비스	C. 소매서비스
b. 소프트웨어시행서비스	D. 프랜차이징
c. DP서비스	6. 환경서비스
d. DB서비스	A. 폐수수탁처리서비스
e. 기 타	B.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서비스
C. 연구개발서비스	D. 기 타
b. 인문·사회과학 부문 R&D서비스	7.금융서비스
E. 임대서비스, 운전인력 제외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a. 선박임대서비스	a. 생명, 의료보험 서비스
b. 항공기임대서비스	b. 비생명보험 서비스
c. 기타 운수장비 임대 서비스	c. 재보험
d. 기타 기계 및 장비 임대 서비스	d. 보험부수서비스
F. 기타 사업서비스	B. 은행 및 기타 서비스
a. 광고서비스	a. 예금수신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서비스	b. 대출서비스
c. 경영컨설팅서비스	c. 금융리스서비스
d. 사업관리서비스	d. 송금서비스
e. 기술적진단서비스	e. 보증서비스
f. 농업 및 축산업, 임업관련서비스	f. 계좌거래
g. 어업관련 자문서비스	g. 증권발행참가
h. 광업관련 자문서비스	h. 자금중개서비스
m. 과학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i. 자산운용서비스
n. 장비의 유지 및 수선서비스	j. 결제서비스
p. 사진서비스	k. 기타 금융부수서비스
q. 포장서비스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r. 인쇄	A. 호텔 및 레스토랑
s. 국제회의의 용역서비스·숙기서비스	B. 여행알선대서비스
t. 번역 및 통역서비스	C. 관광안내서비스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1. 운송서비스
C. 통신서비스	A. 해운서비스
h. 전자사서함	a. 여객운송
i. 음성사서함	b. 화물운송
j. 온라인 정보검색	F. 육상운송서비스
k.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b. 화물운송
l. 고도팩시밀리	H. 운송부수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a. 화물취급서비스
n. 온라인 정보처리	b. 창고서비스
D. 시청각서비스	c. 화물운송대행서비스
a. 영화 및 비디오제작·배급서비스	d. 기타
e. 음반제작·배급서비스	I. 기타운송서비스

- 향후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품목 선정에 따라 GATS 규약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절차를 거쳐야함
 - GATS 규약 위반 시 분쟁당사국이 상대국에 ‘협약’을 요청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WTO 패널이 설치됨
 - 합의된 패널 보고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고, 합의 미도출 시 당사국은 피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한-미 FTA 상충 여부

- 한-미 FTA는 제조업 분야와 달리,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포함한 일반적 의무를 제12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한-미 FTA는 서비스업에 있어 상대국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 시장접근 보장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
 - 제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은 문제가 없을 듯하나, 시장접근 보장의무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큼

◆ 한-미 FTA 제12.4조 시장접근

1.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 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 한-미 FTA는 협정상 부속서에 기재된 협정의무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함

- 한-EU FTA가 개방전제 분야를 규정한 것과 달리, 한-미 FTA는 예외분야 및 사항을 규정하고 이외 모든 분야는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부속서 I에서는 협정상 의무의 예외가 되는 규정⁸⁾이 있고, 이 규정을 보다 강화할 수 없도록 함
 - 부속서 II에서는 경제적 취약집단 우대 조치 등 협정상 의무의 예외로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함
- 따라서 협정상 예외사항 및 분야를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협정 위반에 따른 분쟁 소지가 있음
-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서비스 업종이 한-미 FTA상의 협정내용과 상충된다면, ISD 규정에 따라 미국투자자가 직접 분쟁 제기 가능
 - 또한, 협정문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더라도 당사국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분쟁의 제기가 가능한 ‘비위반제소’ 규정도 포함⁹⁾

3) 한-EU FTA 상충 여부

- 한-EU FTA의 서비스분야에서도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합의된 범위에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없음
- 한-EU FTA는 제7장에서 서비스분야에도 내국민대우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 이외에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규정

◆ 한-EU FTA 제7.5조 시장접근

1.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속서 7-가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는 개방전제 품목을 나열하고, 이에 대해서만 시장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일정요건상 등록·허가된 자만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등 업종별로 시장접근 일부 제한내용 상이; 현재유보상 투자제한은 육우사육업 49%, 국내운송·국제항공운송 49%, 항공기 사용 관련 49%, 통신서비스 49%(2년 후 100%), 뉴스통신업 25%, 정기간행물 49%, 육류도매업 49%, 방송채널사용 49%, 육류도매업 49%, 방송채널사용 49%, 위성방송사업자 33%, 한전 40%, 국내 총발전설비 30%, 송전·배전·판매 5%, 가스공사 29%까지 등으로, 투자 폭의 축소는 협정 위반을 초래함

9) 한-미 FTA 제22.4조 다

< 한-EU FTA 우리나라 개방전제 분야 목록 >

양허 분야	
1. 사업서비스	통신 관련 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장비임대서비스
a. 법률서비스	b. 통신단말장비의 도소매 서비스
b. 회계, 감사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3. 건설서비스
c. 세무서비스	4. 유통서비스
d. 건축설계서비스	A. 위탁중개인서비스
e. 엔지니어링서비스	B. 도매서비스
f.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 소매서비스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서비스	D. 프랜차이즈
i. 수의료서비스	5. 교육서비스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 고등교육서비스
a. 컴퓨터설비 설치 관련 자문서비스	D. 성인교육서비스
b. 소프트웨어 시행서비스	6. 환경서비스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A. 폐수서비스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e. 기타	비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C. 연구개발서비스	B. 폐기물처리서비스
a.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산업폐기물처리서비스
b.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 기타
c. 학제 간 연구개발서비스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
D. 부동산서비스	환경시험평가서비스
중개서비스	토양 및 지하수 정화
감정평가서비스	환경컨설팅서비스
E. 운영자를 동반 않는 임대/리스서비스	7. 금융서비스
a. 선박 관련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b. 항공기 관련	B.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A. 호텔 및 레스토랑
e. 기타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F. 기타 사업서비스	C. 관광안내서비스
a. 광고서비스	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서비스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c. 경영컨설팅서비스	B. 뉴스제공서비스
d. 프로젝트 경영 및 기타 경영 서비스	E. 레크리에이션파크서비스
e. 성분순도검사 및 분석서비스	11. 운송서비스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A. 해운서비스
g. 어업 관련 자문서비스	국제운송
h. 광업 부수 서비스	해상화물취급서비스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항만 내 창고업

양허 분야	
k. 직업소개서비스	통관서비스
l. 조사 및 경비 서비스	해운대리업서비스
m. 과학,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o. 빌딩청소서비스	해운중개서비스
p. 사진서비스	선박 유지 및 보수
q. 포장서비스	선원포함 선박대여
r. 인쇄 및 출판	예선서비스
s. 국제회의 및 숙기서비스	검수·검정·검량서비스
t. 번역 및 통역, 전문디자인 서비스	C. 항공운송서비스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컴퓨터예약시스템(CRS)서비스
B. 큐리어서비스	항공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C. 통신서비스	항공기 유지 및 보수
a. 음성전화서비스	승무원포함 항공기임대
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서비스	지상조업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서비스	E. 철도운송서비스
d. 텔렉스서비스	a. 여객운송
e. 전신서비스	b. 화물운송
f. 팩시밀리서비스	c. 철도 유지 및 보수
g. 전용회선서비스	d. 철도운송 부수서비스
o. 기타	F. 도로운송서비스
h. 전자메일	a. 카보타지 제외 컨테이너화물운송
i. 음성메일	b. 운영자 포함 비정기 버스 임대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c. 도로장비 유지 및 보수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G. 파이프라인 운송
l. 고도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	H. 모든 형태의 운송 부수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b. 항만구역 외의 창고업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	I. 기타 운송서비스
o. 기타 온라인 DB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	12. 기타 서비스
	b. 머리 미용 및 기타 미장 서비스

- 향후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결과에 따라 한-EU FTA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분쟁 소지 존재
- 제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합업종제도가 취약계층 우대 조치 등 협정 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20개 EU국가와 개별 투자협정을 통해 ISD를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적합업종 지정으로 협정 사항이 위반될 경우 투자자의 직접 제소 가능성

IV. 결론 및 시사점

-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는 WTO, 한-미 FTA, 한-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국제협정과 배치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
 - 제조업의 경우 향후 규제 강화 시 한-미 FTA 협정상 간접수용을 이유로 제소 가능성이 존재하며, 한-EU FTA와도 상충될 것으로 판단
 - 서비스업의 경우 향후 GATS 및 한-EU FTA의 개방전제 품목과 한-미 FTA 협정상 예외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 시 협정 위반 우려
- 협정 위반에 따른 소송남발 가능성과 국가 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며, 소송 패소 시 막대한 금전적 부담도 감안해야 함
 - 협정 위반 시 WTO 규정상 중재제도, 한-미 FTA상 ISD 및 비위반제소, EU 개별국가의 ISD 제소를 통한 국제분쟁으로 국가 신인도 하락 우려
 - 국제협정 위반 사유로 국제분쟁에서 패소한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협정 위반으로 인한 배상 사례: Metaclad 사건>

- 美 Metaclad사가 멕시코 연방정부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고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유독물질 발생 등 위험성 제기
- 이에 멕시코 정부가 동 부지에 대하여 생태구역지정 및 시설설립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리자, Metaclad사는 간접수용 등을 이유로 제소
- 제소 결과, 멕시코 정부는 약 1,7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Metaclad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 국제규범과의 상충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적합업종제도 규제 강화 및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국회는 적합업종 법제화, 사업이양 강제화 등의 논의를 지양하고, 동반위는 서비스업이 국제협정상 양허 범위가 넓은 만큼 지정범위 확대를 자제
- * 현재 논의 중인 SI가 신규지정되어 MS, ORACLE, SAP, IBM, HP 등 국내진출 외국 대기업까지 피해가 갈 경우 국제제소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존재
 - 제도 강화보다는 적합업종 지정·적용상 민간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대기업의 이행실태 점검·공표를 통한 자발적 준수 유도가 바람직

참고문헌

이선화(2012.9),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KERI Brief 12-08)」, 한국경제연구원

정누리(2013.9),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국제통상법 적용대상 적격성 및 위배 가능성에 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3호, 이화여대

김태윤(2014.4),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결정에 대한 규제성 검토」, 한양대
동반성장위원회(2014.6),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안)」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07.6),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0.10),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s states, of the other part」

